

**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  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**

**- 요약문 -**

**2020. 3.**



**해양수산부**

# 제1장 계획의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### 가. 계획의 배경

- 군산항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구현을 위해서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변화 대응과 물동량 창출 및 항만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.

#### 군산항

- ① 군산항은 대중국 교역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서해권 타 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
- ②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
- ③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전북지역의 물류중심 항만 조성 및 부두 기능 재조정, 항만시설 개선을 통한 항만 운영 효율 및 안전성 제고

### 나. 계획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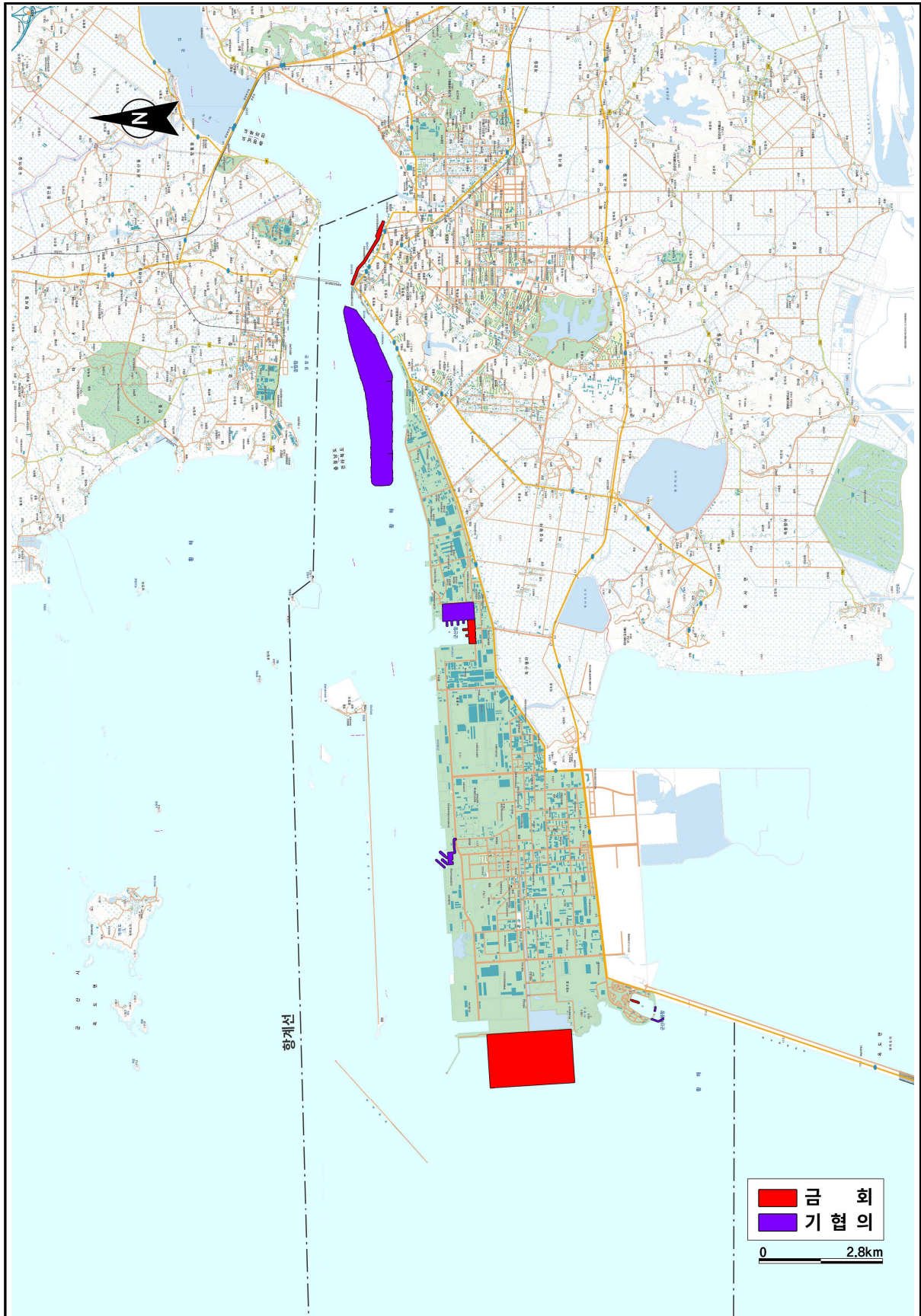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은 2016년 고시된 「제3차(2016~2020)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」 수립 후 기간경과에 따른 국내·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고,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, 「항만법」에 의거 「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군산항

- ①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써 남북의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상생발전과 항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항만운영의 고도화 및 전북지역 물류거점항만 실현
- ②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지원항만의 수출전진기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, 안정적 물동량 처리와 재해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항만개발계획을 수립

### 다. 개발방향

- 부두기능 재정립 및 항로 이용여건 개선을 통해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물류지원 항만으로서의 역할 수행
- 안정적 항로 수심확보 대책 마련에 따른 준설계획 이행여부 및 추가 준설투기장 마련을 통한 부두 수심확보
- 부족한 관리선 접안시설 확보를 통한 부두 관리 효율성 증대
- 침수 방재시설 설치 통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항만지역 생활여건 활성화



(그림 1.1-1) 계획대상지 위치도(지형도)

## 1.2 계획수립 및 협의근거

### 가. 항만기본계획 수립

- 본 계획은 「항만법」 제5조(항만기본계획의 수립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「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」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〈표 1.2-1〉 항만기본계획 수립 법적근거

구 분	내 용
항만법	<p>제5조(항만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
	<p>제8조(항만기본계획의 고시)</p> <p>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

### ※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의제사항

- 「항만법」 제8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정·고시한 것으로 본다.

〈표 1.2-2〉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과의 관계

구 분	내 용
항만법	<p>제85조 (관련 인가·허가 등의 의제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</p>

## 나.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해당되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제2항,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[별표 2]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.
- 제4차 항만기본계획(군산항) 전체계획 규모는 4,521,375㎡이나, 타법률(항만법, 신항만건설촉진법 등)에 의거하여 기 협의된 사항(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등)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 2] 비고 3.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, 금회 협의 대상규모는 2,229,514㎡임.

〈표 1.2-3〉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	<p><b>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</b>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<b>4.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(이하 "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"이라 한다)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2. 개발기본계획: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</p> <p>가.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</p>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	<p><b>제7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</b></p> <p>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(이하 "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"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종류는 <b>별표 2</b>와 같다.</p>

〈표 1.2-4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라. 항만의 건설	5)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	「항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차. 개간·공유수면 매립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비고1.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.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.

3.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**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.**

나.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**별표 1**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자료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2]

## 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### 가. 추진경위

- 1899. 05. 01 : 국제무역항으로 개항
- 1995. 04. 17 : 「제1차(1992~2001) 항만기본계획」 고시
- 2001. 12 : 「제2차(2002~2011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」 고시
- 2002. 12 : 「군산항 기본계획 변경」 고시
- 2004. 10. 25 : 군장 신항만 남측안벽(3공구) 축조공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
- 2006. 11. 28 : 군장항 잡화부두(2선석)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
- 2006. 12 : 「제2차(2006~2011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」 고시
- 2010. 06. 15 : 「군산항 기본계획 변경」 고시
- 2011. 06. 29 : 제3차(2011~2020) 항만기본계획(무역항)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 
【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-1819】
- 2011. 07. 29 : 제3차(2011~2020) 항만기본계획고시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402호】
- 2015. 09. 02 : 군산항 항만 기본계획 변경고시【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8호】  
(비응항 동·서방파제, 부선물양장,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)
- 2016. 09. 29 : 제3차(2016~2020)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
【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2호】
- 2017. 08. 23 :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 
【새만금청 환경평가과-3171】
- 2018. 06. 26 : 제4차(2021~2030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
- 2018. 12. 20 :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 
【새만금청 환경평가과-6759】
- 2019. 10. 02 : 제4차 전국 항만(무역항)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- 2019. 12. 23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평가준비서 심의요청  
(해양수산부 → 관계기관 및 전문가, 주민대표 등) 【항만정책과-3945】
- 2020. 02. 04 ~ 02. 17 :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20. 03. 09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(해양수산부→관계 행정기관)  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 【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-602호】  
※ 공람기간 : 2020. 03. 09. ~ 2020. 04. 03(20일간)

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
-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
- 제4차(2021~2030) 전국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 고시

## 1.4 계획의 내용

가. 계획 명 : 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

나. 계획 수립기관 : 해양수산부

다. 협의 기관 : 환경부

### 라. 계획의 범위

#### 1) 시간적 범위

- 기준연도 : 2021년
- 목표연도 : 2030년

#### 2) 공간적 범위

-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일원

### 마. 계획의 규모

- 계획면적 : 2,229,514㎡
- 외곽시설 : 4,620m
- 매립반영 요청면적 : 2,158,000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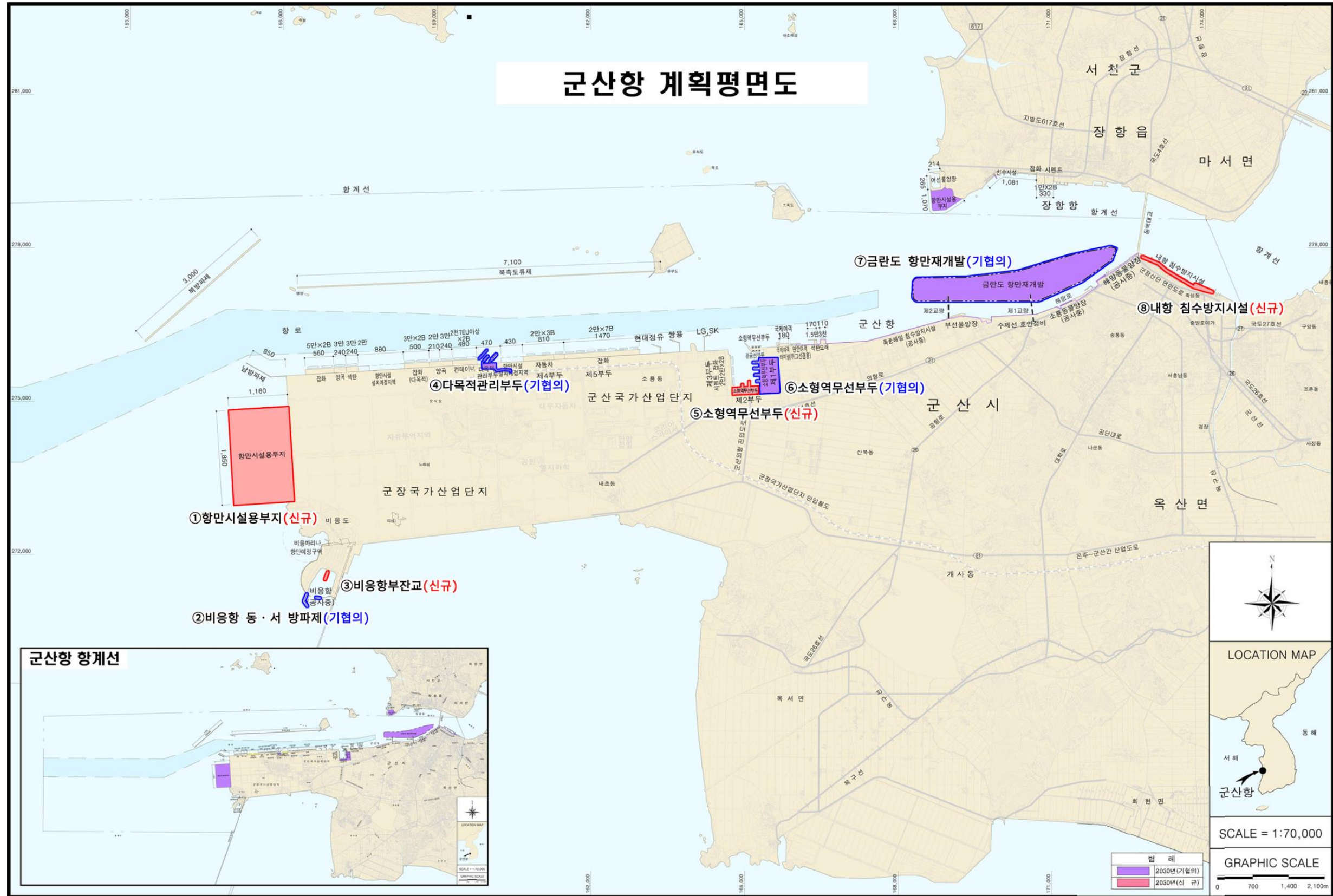
구 분	협의대상 규모		전체 계획규모	비 고
	기협의	금회		
계획면적	2,291,861㎡	2,229,514㎡	4,521,375㎡	
외곽시설	600m	4,620m	5,220m	
매립면적	-	2,158,000㎡	2,158,000㎡	
기 타	○ 부잔교 1식 ○ 준설 1식			

주) 기협의 규모 : 1. 「제3차(2011~202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 사전환경성검토서, 2011.06.29.」  
2. 「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약식평가서), 2017.5, 군산지방해양수산청」  
3. 「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, 2018.9, 군산지방해양수산청」

〈표 1.4-1〉 군산항 개발계획 규모

구 분	협의대상규모		전 체 계획규모	비 고	도면	
	기협의	금회				
계획 면적	합 계	2,291,861㎡	2,229,514㎡	4,521,375㎡		
	항만시설용부지	-	2,146,000㎡	2,146,000㎡	신규	①
	비응항 동·서방파제	3,750㎡	-	3,750㎡	기협의	②
	다목적 관리부두	21,250㎡	-	21,250㎡	기협의	④
	소형역무선부두	240,371㎡	-	240,371㎡	기협의(기능전환)	⑥
		-	71,514㎡	71,514㎡	신규(2부두)	⑤
	내항 침수방지시설	-	12,000㎡	12,000㎡	신규	⑧
금란도 항만재개발 (3차 수정계획 시 친수시설)	2,026,490㎡	-	2,026,490㎡	기협의	⑦	
외곽 시설	소 계	600m	4,620m	5,220m		
	항만시설용부지 호안	-	4,170m	4,170m	신규	①
	비응항 동·서방파제	350m	-	350m	기협의	②
	다목적 관리부두 파제제	250m	-	250m	기협의	④
	내항 침수방지시설	-	450m	450m	신규	⑧
매립 면적	합 계	-	2,158,000㎡	2,158,000㎡		
	항만시설용지부지	-	2,146,000㎡	2,146,000㎡	신규	①
	내항 침수방지시설	-	12,000㎡	12,000㎡	신규	⑧
기타	내항 침수방지시설	-	1.7km	1.7km	신규	⑧
	준 설	1식				
	부잔교	1식		신규 (비응항 부잔교)	③	

주) 기협의 규모 : 1. 「제3차(2011~202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 사전환경성검토서, 2011.06.29.」  
 2. 「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약식평가서), 2017.5, 군산지방해양수산청」  
 3. 「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, 2018.9, 군산지방해양수산청」



(그림 1.4-1) 제4차(2021~2030)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군산항) 계획평면도

## 제2장 지역개황

보호구역 명칭	근거법령	지정 현황
상수원보호구역	수도법 제7조	○해당사항 없음
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	습지보전법 제8조	○해당 -항계선내 서천갯벌 습지보호구역 위치
야생생물 보호구역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	○해당 -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보호구역은 남측 약 2.0km 이격
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	○해당사항 없음
생태·경관보전지역	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	○해당사항 없음
시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	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	○해당사항 없음
자연공원	자연공원법 제4조	○해당사항 없음
백두대간 보호지역	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	○해당사항 없음
특정도서	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	○해당사항 없음 -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특정도서는 남서측 약 12.5km 이격
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	산림보호법 제7조	○해당사항 없음 -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보호구역은 북서측 약 7km 이격
대기환경규제지역	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	○해당사항 없음
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	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2조	○해당사항 없음
악취관리지역	악취방지법 제6조	○해당사항 없음
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항만	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	○해당사항 없음
배출허용기준(폐수) 적용을 위한 지역	물환경보전법 제32조	○해당사항 없음
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	-	○해당사항 없음
환경보전해역	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	○해당사항 없음
특별관리해역	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	○해당사항 없음
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	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조	○해당사항 없음
수산자원보호구역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	○해당사항 없음
수산자원관리수면	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,제11조	○해당사항 없음
해양보호구역 (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)	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	○해당 -항계선내 서천갯벌 습지보호구역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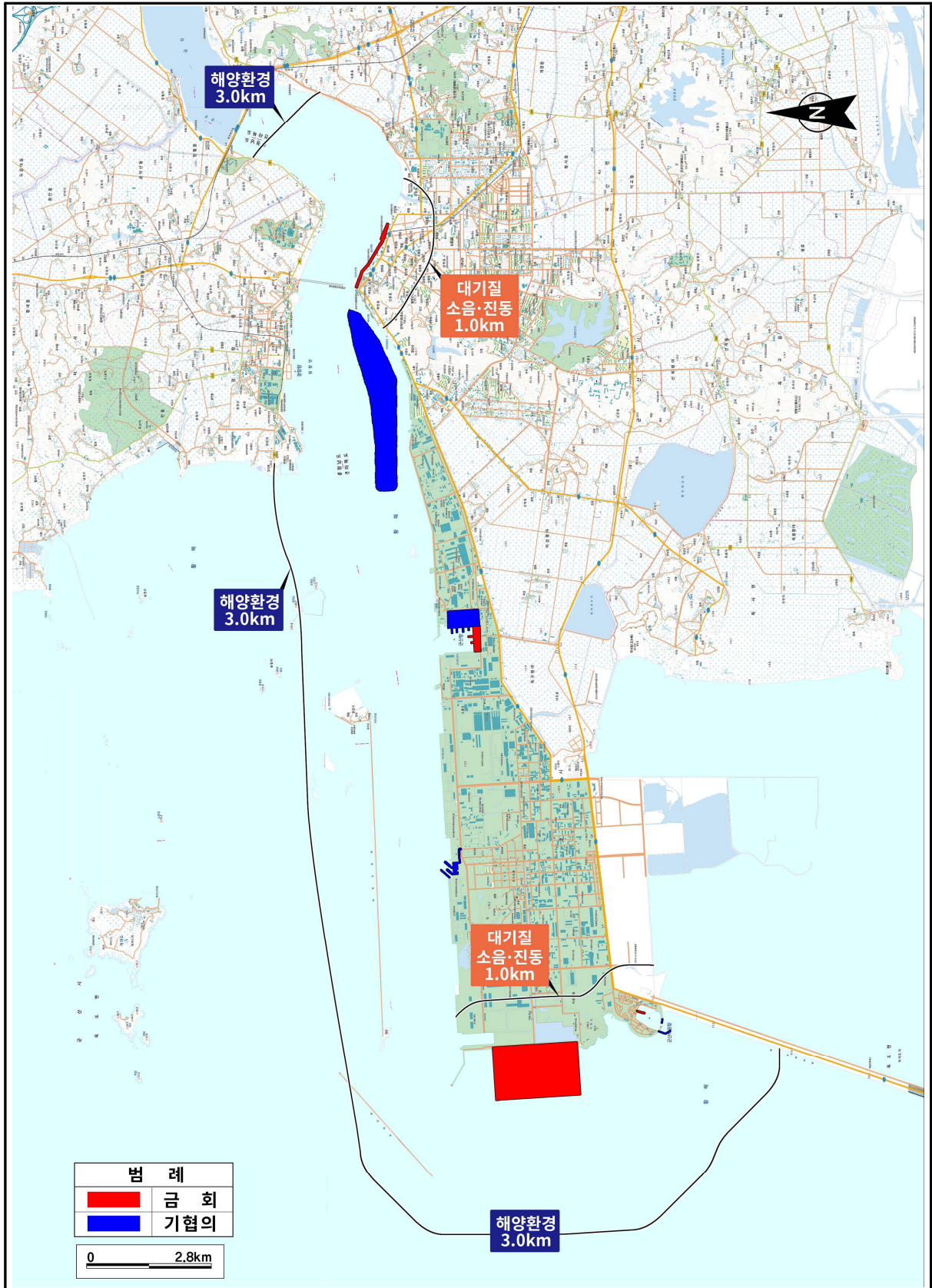
##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선정

### 3.1 평가항목의 설정

구 분	평가항목	결정 결과	선 정 사 유	비고
계획의 적정성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선정	○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 및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	○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
	○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선정	○ 계획비교, 수요·공급 및 시기·순서에 대한 대안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기타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의 보전	선정	○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	○ 육상 동·식물상
			○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영향 및 훼손의 가능성 여부	○ 해양환경 (해양동·식물상)
			○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여부	
	○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			
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선정	○ 학술적·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
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선정	○ 자연경관 현황 파악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
	○ 생태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			
생활환경의 안정성	○ 수환경의 보전	선정	○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·간접적인 영향 여부	○ 해양환경 (해양물리, 해양수질·퇴적물)
			○ 해양물리, 해양수질 등 변화	
	○ 환경기준 부합성	선정	○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	○ 대기질(기상)
		○ 대기질, 소음·진동, 해양수질 등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	○ 소음·진동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○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선정	○ 계획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파악	○ 지역개황
	○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선정	○ 계획대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적정 방안 검토	○ 친환경적 자원순환
			○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	○ 온실가스
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선정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

### 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범위	평가방법	비고
계획의 적정성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○ 군산항 관련 상위계획	○ 상위 행정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
	○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 계획대상지	○ 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검토	○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
자연환경의 보전	○ 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○ 계획대상지	○ 육상동·식물상 현황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예측	○ 육상동·식물상
	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3km	○ 해양동·식물상 현황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 예측	○ 해양환경 (해양동·식물상)
	○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지형 및 지질 현황 조사 ○ 지형변화 및 지반안정성 검토 ○ 재료원 공급계획 검토	○ 지형·지질
	○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 검토 ○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	○ 경관
	○ 수환경의 보전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해역 - 해양환경 경계기준 3km	○ 해양수질·저질 현황 조사 ○ 공사시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 ○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, 퇴적변화 예측	○ 해양환경 (해양물리, 해양수질·저질)
입지의 타당성	○ 환경기준 부합성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- 대기질 경계기준 1km - 소음·진동 경계기준 1km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질 현황 조사 ○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및 NO <sub>2</sub>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○ 주변 정온시설 파악 및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 검토	○ 대기질(기상) ○ 소음·진동
		○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○ 계획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파악
	○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계획대상지	○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안 검토 ○ 공사시 장비투입 및 운영시 에너지(연료 등)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	○ 친환경적 자원순환 ○ 온실가스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계획대상지	○ 운영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검토	○ 토지이용



(그림 3.2-1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# 제4장 대안의 설정

## 4.1 대안 설정 개요

- “대안”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.
-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계획비교, 수단방법, 수요·공급, 입지, 시기순서,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.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 설정은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.)」[별표4]에 따라 설정하였으며, 다음 표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「계획비교», 「입지」를 선정하였다.

〈표 4.1-1〉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대안종류	대안 선정방법
계 획 비 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
수 단 · 방 법	○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
수 요 · 공 급	○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입 지	○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
시 기 · 순 서	○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기 타	○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

자료 :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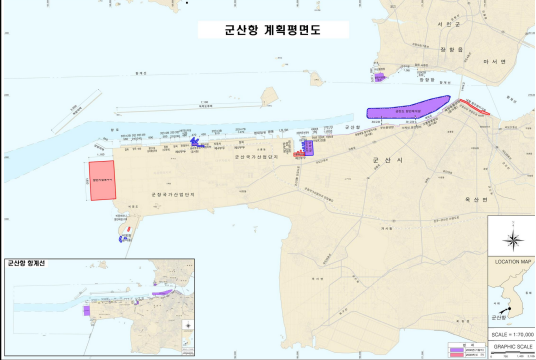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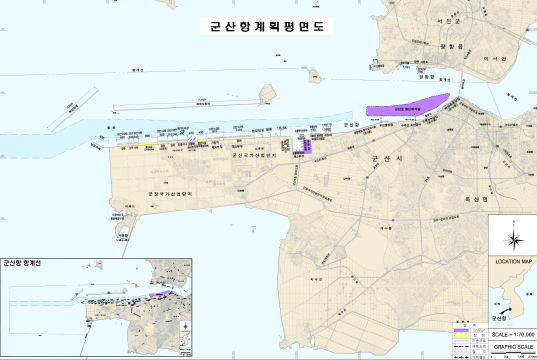
〈표 4.1-2〉 본 계획의 대안 설정

대안종류	대안의 설정
계 획 비 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 - 2019년 기준으로 군산항의 현재 상태 ○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 -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
입 지	○ 제1안 : 「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」에 반영된 계획안 ○ 제2안 : 장항항 접안시설 해역 설치안 ○ 제3안 : 소죽도 해역 설치안

## 4.2 대안별 비교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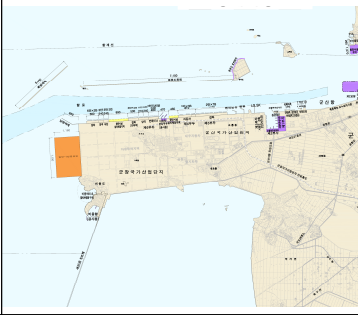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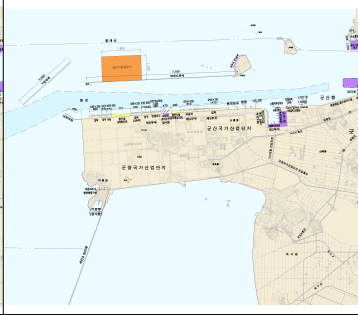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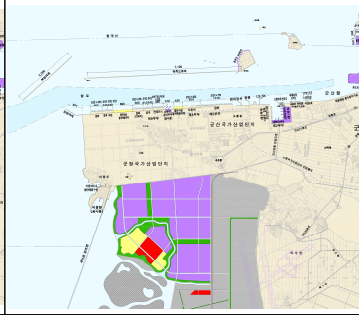
### 가. 계획비교 대안

- 계획비교 대안의 경우 계획대상지로 선정하였을 경우(제1안)와 계획대상지로 미선정하였을 경우(제2안)를 비교하였으며 주변 개발여건,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였다.

구 분	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	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
평 면 도		
개 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서 지역 간 상생발전과 항만 서비스의 고도화 실현</li> <li>○ 상시 선박운항과 안정적 화물 처리를 위한 항로 유지준설토 투기장 확보</li> <li>○ 항만의 관리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후 산업단지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배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</li> <li>○ 내항지역의 친환경·고부가가치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</li> </ul>
개발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곽시설(4,620m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만시설용부지 : 4,170m(호안)</li> <li>- 내항 침수방지사설 : 450m(호안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곽시설(600m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응항 : 350m(방파제)</li> <li>- 다목적 관리부두 : 250m(파제제)</li> </ul> </li> </ul>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기장 확보를 통한 신속한 물동량 처리 및 물류비 절감으로 물류기능 향상</li> <li>○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안전성 강화를 통한 주민생활여건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 사업비 절감</li> <li>○ 선석 추가 확보로 인한 장래 수요 대비 가능</li> </ul>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제2준설토 투기장 토지 이용 대책 필요</li> <li>○ 군산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 방안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지준설토 안정적 처리 불가로 항만 이용 불편 및 물류비 가중, 손실비용 발생</li> <li>○ 침수피해 등 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항만과 주변의 정주여건 불량</li> </ul>
채 택 안	○	

## 나. 입지

- 입지 대안의 경우 군산항 서측 호안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(대안1)과 군산항 북측도류제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(대안2), 새만금 남측용지에 준설토투기 계획(대안3)을 비교하였으며 주변 개발여건,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였다.

구 분	대안1	대안2	대안3
평 면 도			
개 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산항 서측 호안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</li> <li>○ 군산항 내 항로 유지준설토 투기 완료 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산항 북측도류제에 인접하여 준설토 투기장 계획</li> <li>○ 군산항 내 항로 유지준설토 투기 완료 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산항 남측 새만금개발 용지에 군산항 항로 준설토 투기계획</li> </ul>
개발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곽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안 4,170m</li> </ul> </li> <li>○ 항만시설용부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만시설용부지 2,146천㎡</li> </ul> </li> <li>○ 수토용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0,044천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곽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안 4,170m</li> </ul> </li> <li>○ 항만시설용부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만시설용부지 2,146천㎡</li> </ul> </li> <li>○ 수토용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1,000천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새만금개발사업 인접용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생태용지 (새만금개발사업 북측용지)</li> <li>- 국제협력용지 (새만금개발사업 남측용지)</li> </ul> </li> </ul>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양보호구역 및 어업권 직접 세력권이 없어 입지여건 양호</li> <li>○ 대수심 해역, 사질토 해저질로 부유사 영향 최소화</li> <li>○ 준설토 평균 운반거리 15km로 투기 효율성 우수</li> <li>○ 주변 육상과 접근성 우수로 장래 토지활용 편익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거리 준설토 운송으로 투기 비용절감 가능</li> <li>○ 시공시 파랑 영향이 적어 해상시공 유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호안시설 설치비용 절감</li> </ul>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기장 조성 추가비용 발생</li> <li>○ 환경오염 추가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양보호구역 및 어업권 직접 세력권 인접으로 입지여건 불량</li> <li>○ 투기장 조성 추가비용 발생</li> <li>○ 환경오염 추가 발생</li> <li>○ 육상과 접근성 불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지별 사업여건(시기, 사업자 등) 불확실로 안정적 투기 불가</li> <li>○ 육상 중계펌프 운반거리 한계(20km)로 해상 그라브 준설토 운반 시 방조제 횡단에 따른 작업여건 불량</li> <li>○ 새만금개발사업 호소 내 준설토 매립재 활용 대비 경제성 불량</li> </ul>
채 택 안	○		

## 제5장 결 론

- 본 계획은 2016년 고시된 「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(2016~2020)」 수립 후 기간경과에 따른 국·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법에 의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구현을 위해서는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변화여건을 고려한 항만개발방향 정립, 항만공간 및 항만시설의 다목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.
- 본 과업의 시행에 따라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토사 확산 영향, 매립공사시 비산먼지 발생, 건설장비의 소음발생과 해상구조물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.
- 그러나, 각 영향에 따라 공사시 오탉방지막 설치, 필터매트 포설 등 현실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, 향후 단위개발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정해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.